

[한국실업축구연맹 회원관리 규정]

제1조 [회원의 자격]

(사)한국실업축구연맹(이하 '연맹') 회원은 연맹이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연맹이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가입절차를 충족한 구단으로 한다.

제2조 [회원의 가입]

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·양수하고자 할 경우,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가입 한다. 가입신청서 요건 서류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. 단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요건 서류를 추가 및 생략할 수 있다.

1. 신생구단 창단 관련 업무 추진 현황 소개
2. 축구단 인가 신청서
3. 구단 조직도
4. 창단 및 운영 주체 주주명단
5. 창단연도 예산(안) 및 예산확보 계획
6. 창단 이후 5년간 운영비용 예산(안) 및 예산 확보계획
7. 연고도시 체결 계약서
8. 홈경기 운영 계획서

제3조 [회원의 권리]

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
2.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
3. 연맹이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
4.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, 주관 및 후원
5. 기타 연맹 규정에 따른 권리행사

제4조 [회원의 의무]
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
1. FIFA, AFC, 협회의 정관, 연맹규정 및 제반규정, 지시사항,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
2. 연맹에서 주최, 주관하는 사업, 행사, 대회의 참가
3. 연맹 '회원가입세칙'사항의 준수이행
4. 조직, 정원,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
5. 회비 및 등록비의 납부
6. 회의 소집시 출석 의무
7. 기타 연맹에서 결정하는 사항

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연맹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

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 [회원의 상벌]

- ① 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맹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표창하고, 물의를 일으켜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협회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.

제6조 [회원의 자격상실]

-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.
 - 1. 탈퇴할 때
 - 2. 해산 또는 파산할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았을 때
 - 3. 제명되었을 때
- ② 회원이 연맹을 탈퇴 하고자 할 때는 희망일 6개월 전까지 탈퇴사유를 명시한 탈퇴서를 연맹 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, 차기 총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
- ③ 회원이 연맹의 명예를 손상 또는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, 본 정관 제1명시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, 소명 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. 회원의 제명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본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,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7조 [분쟁조정]

- ①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분쟁에 대한 연맹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.
- ② 연맹은 연맹, 회원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맹, 협회, 대한체육회, AFC,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③ 연맹은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맹의 규정으로 한다. 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이를 처리한다.